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른 소관 부서의 명칭 등 행정조직체계를 현행화하고,
- 나. 선산노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복지관 이용 어르신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공공질서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: 분관 설치에 따른 명칭과 위치 반영 (안 제2조제2호)
- 선산노인종합복지관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붙임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”을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과 위치)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

1. 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: 구미시 산책길 51
2. 선산노인종합복지관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둔다”를 “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이용대상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”를 “이용대상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자”를 “이용희망자”로 한다.
별표 1의 제목 중 “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이용요금”을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이용요금”으로 한다.

별표 2의 제목 중 “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사용요금”을 “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부대시설 사용요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<u>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</u>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위치) <u>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</u> 은 <u>구미시 산책길 51에 둔다.</u>	제2조(명칭과 위치) <u>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)</u> 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. 1. <u>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: 구미시 산책길 51</u> 2. <u>선산노인종합복지관 :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117</u>
제3조(시설)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<u>둔다.</u> 1. ~ 10. (생략)	제3조(시설) ----- ----- <u>둘 수 있다.</u> 1. ~ 10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시설의 이용) ① <u>복지관 이용대상자(이하 “이용자”라 한다)</u> 는 구미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. ② <u>복지관 시설규모에 비하여 이</u>	제6조(시설의 이용) ①----- <u>이용대상자</u> ----- ----- -----. ②----- <u>이</u>

<u>용자</u>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순서를 제 한할 수 있다. 1. · 2. (생 략)	<u>용희망자</u>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--	--

관계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소 관 부 서		노인종합복지관
입 안 자	관 장	박 상 호
	담 당	황 재 봉
	담 당 자	박 현 숙 (480-4877)